ISSN 1598-0170 (Print)
ISSN 2287-1136 (Online)
http://www.jksii.or.kr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about regulation improvement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심 용 호[1] 길 운 규[2] 김 서 균[1*]
Yong-ho Sim Wun-gyu Gil Seo-kyun Kim

요 약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주제어 : 벤처, 창업, 규제개선, 정책 우선순위, 정보통신기술, 창조경제, 분석적 계층화 방법

ABSTRACT

Technology based start-up is actively encouraged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vitalize technology based start-up.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should be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policy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 plan for regulation improvement about vitalization of start-up(25 cont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as analyzed using AHP method. The object of study is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CEO of ICT se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25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1- expectation of effect, 2 - urgency of system enforcement, 3 - complement of deficiencies, 4-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to quantitative analysis about importance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Also, It can be utilized when policy making and practice about technology based start-up.

☞ keyword : Start-up, Technology based startup, Regulation improvement, Policy prior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Creative econom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서 론

세계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은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수 아이디어를 ICT 기술과 결합하여 신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13. 5)',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 9) 등 다양한 창업지원 대책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단계별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술창업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기술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비교하여 생산성과 고용증대 효과가 매우커서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의 경우 창업 10년 후 생존률이 50%에 달하고 (전체 평균 생존률 : 26%)[1], 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9.5명(전체 : 2.85명 / 생계형 창업 : 2.5명)에 이를 정도로 파급효과가 높다[2].

[1]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Daejeon, 305-700, Korea.
[2] ICT Managemen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05-350, Korea
* Corresponding author (sk-kim@etri.re.kr)
[Received 26 April 2015, Reviewed 18 May 2015, Accepted 18 June 2015]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ETRI 개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결과물임(과제고유번호 : 15ZV1300)

그러나 높은 직업 안정성 및 실패위험 부담 등으로 기술창업의 핵심이 되는 고급 인력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벤처기업 중 교수·연구원 창업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06) 20.1% → ('10) 9.9% → ('12) 7.9%)[3]. 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 곳곳에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 요소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수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창업 시작단계부터 재도전에 이르는 전주기적 개선과제 28개를 도출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개(전체 28개 중 M&A관련 규제 4건은 1건으로 함축)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T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평가요소들 사이의 우선순위 비교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연구

2.1 ICT 벤처기업의 정의 및 필요성

ICT 벤처기업은 이익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개발·생산·판매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조직화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4]. 이진주(1984)는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심기술 창업인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기술(첨단기술)보유 신생기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5], 현재 법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을 벤처 등록요건으로 하여 ICT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ICT 벤처기업은 과거 일자리 및 창업을 주도하는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벤처버블이 나타나면서 높은 폐업률을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통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벤처 및 창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T 벤처기업을 법령에 따라 정의되는 벤처기업에 속하고,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2.2 정부의 벤처·창업 주요 정책 흐름

1980년대 벤처기업 출현 이후,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과 민간창업투자회사들의 설립은 기업가정신에 기인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발하였다. 특히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벤처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이 주로 시행되었다. 2001년에는 창업보육사업 관련 인프라를 집중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벤처평가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벤처확인 절차의 온라인화에 역점을 두었다. 2004년에는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평가하여 우수한 센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센터에게는 제재를 가하였다. 2006년에는 창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고, 2008년에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며 창조경제 실현의 최우선순위로 벤처·창업을 강조하였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며 제2의 벤처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35개의 벤처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을 정부가 수용하였다는 반응과 함께 그간의 벤처 대책 중 가장 실리적이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받았다[7].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14년 현재 6개 부처, 32개 세부사업으로 2조 1,661억원,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1조 9,115억원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자금(금융) 지원 사업이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교육, 공간 등), 인식조성 사업의 예산비중은 낮은 편이다.[8]

2.3 벤처 창업 정책 선행연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1997년 이후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것은 대기업, 재벌로 표현되는 경직된 경제 구조에서 벤처의 혁신성과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발표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서 제안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카테고리에 맞추어 기존에 수행된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2.1 창업

창업의 진입확대와 부담완화를 위한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노현섭(2000), 이인재 외(2002)는 벤처기업이 지방세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받기위해 규정되어 있는 까다로운 세법의 조건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벤처기업은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과 신상품 개발 등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9][10]. 이형수·김갑순(2010)은 벤처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 조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조세혜택을 통해서 신규 벤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자격 요건의 까다로움이 시장 진입의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김동훈(2012)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유효성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과 관련된 조세지원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2]. 송치승·박재필(2013)도 벤처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 정책이 벤처기업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정책이라고 분석하였다[4].

2.2.2 성장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다수의 연구는 자금조달과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김재진(1997)은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과 성과를 비교하여 VC(Venture Capital)를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창업 지원 인프라의 부족 및 관련 법규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13]. 채광기 외(2011)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재무성과와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대부분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서는 정부의 개입, 즉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14].

김재현·박명철(2002)은 벤처기업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이며 민간 자본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금융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15]. 이에 반해 박용린(2013)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16]. 이성준·김중화(2014)는 스웨덴의 창업지원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창업 리스크를 흡수,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7].

한편, 창업보육센터 연구와 관련하여 양현봉(2004)은 361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 비교를 통해 창업보육사업의 사후관리 강조 및 전문화/특성화를 제안하였다.[18]. 박경주(2006)는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분석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비는 성과와 양(+)의 관계가 있으며 국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고용창출효과 역시 큰 것을 밝혔다[19]. 강인선(2011)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창업 보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창업보육센터가 갖춰야 한 전략을 제안하였다[20].

2.2.3 회수

우리나라의 회수시장은 아직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하여 M&A 비중이 상당히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우(2007)는 VC의 M&A 유도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VC는 자연스레 도태시키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1]. 박용린(2013), 이민화·김영지(2013), 장수덕·이민화(2013) 등도 역시 투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는 중간 회수 시장 육성을 위해 M&A 활성화를 강조하였다[16][22][23]. 김도현(2013)은 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존기업이 내부자금을 별도로 펀드의 형태로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벤처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기업벤처투자회사(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제안하였다[24]. 이외에도 한정화 외(2007)는 교수·연구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비교우위 강점을 지닌 교수·연구원이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수 있도록 퇴출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5].

2.2.4 재도전

재도전과 관련하여 백필규(2011)는 기업 실패요인과 재기 성공요인 조사를 통해 실패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26]. 신용불량자 기록으로 인한 재창업 곤란, 과도한 채무부담, 부실 리스크를 우려한 지원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었고, 지원방식,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이 요구사항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패자부활, 대표이사 연대 보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벤처의 실패 경험을 자산을 삼자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연대보증제도의 개정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민화·김영지(2013)는 연대보증제 개선을 통한 혁신 활성화를 제안하였고, 장수덕·이민화(2013)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도 및 통합도산법 제250조의 개정을 통해 가벼운 창업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제3자 연대보증면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22][23].

3. 연구의 모델 및 방법

3.1 연구의 모델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평가방법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우선순위 도출 과정은 이해당사자의 견해가 잘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계적 방법론 보다는 설문조사에 따른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27]. 이해당사자 간 이견의 가능성이 있는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 판단을 종합하여 정량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Thomas L. Saaty는 이와 같이 정성적 변수를 정량화하여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개발하였다. AHP는 최상위 수준의 변수를 만들고 하위 수준의 문제를 계층구조로 만든다. 그 후,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1:1 비교를 통해 변수들의 중요도를 평가한다[28]. AHP 방법은 문제를 계층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쌍대비교를 통한 일관성을 측정하여 판단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 분석에 있어 신뢰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27].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AHP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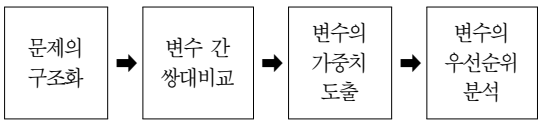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정의한 25가지 제도개선 내용을 변수로 활용하여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후 도출된 계층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A변수와 B변수 중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쌍대비교를 통해 두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각 설문의 결과 값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활용하여 평가 항목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중치를 순서화하여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단계		규제개선 내용
창업	1. 진입 확대	1-1.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1-2. 벤처 신청 가능 업종 확대
		1-3.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2. 부담 완화	2-1. 창업기업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2-2.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
		2-3. 벤처확인 평가체계 개편(혁신능력 중심)
		2-4. 온라인 법인 설립 대상 확대 (주식→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
성장	3. 인재 유치	3-1. 대학생 창업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3-2.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3-3. 휴겸직 창업대상 및 휴직기간 확대
	4. 입지 확보	4-1.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4-2.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
		4-3. 실험실 공장 설치요건 완화
	5. 자금 조달	5-1. 엔젤펀드 참여제한 완화
		5-2.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규제 완화
		5-3. 개인의 한국벤처투자펀드 유한책임 조합원 참여 허용
		5-4. 한국벤처투자펀드 주요 출자자 범위 완화
	6. 판로 확대	6-1. 공공기관 조달 시 창업기업 불리규정 폐지
		6-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정비
회수	7. M&A IPO 활성화	7-1. M&A후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
		7-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 단축
		7-3. M&A관련 규제완화
재도전	8. 재창업 촉진	8-1. 재창업자의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8-2.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신설
		8-3. 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3.2 연구의 방법

(표 2) 연구 방법
(Table 2) Method of study

구분	연구 방법
문헌조사	-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자료 수집 - 정부 규제개선 내용 보고자료 수집
인터넷 조사	- 주요 담당기관 별 규제개선 내용 시행여부 현황파악 자료 수집
설문조사	- 규제개선 내용 중요도 파악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 최종 결과에 대한 전문가(CEO, VC, 기타 창업 조력자 등) 추가의견 수렴

AHP를 이용한 변수 간 중요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최종 의사결정자 등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에 대해 기술창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기술창업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혁신형 기술을 활용한 창업은 생존율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행 시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 6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 4부를 제외한 57부를 바탕으로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대부분 “J58-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

(표 3) 설문 대상 기업의 업종
(Table 3) Category of the surveyed companies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수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J58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
J61	통신업	2
J63	정보서비스업	1
M70	연구개발업	1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2

분석 대상 기업이 판단하는 규제개선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응용 프로그램인 Super Decision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 가중치를 행렬로 분석하여 최종 중요도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변수 중 2015년 3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과,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분류하여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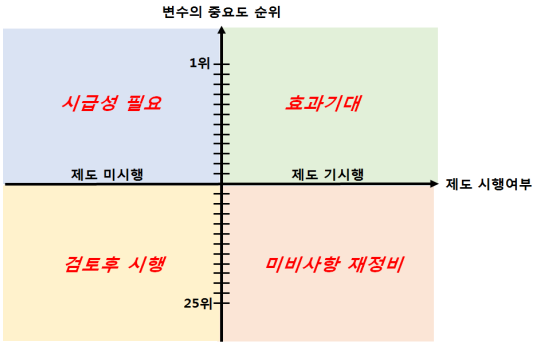

(그림 1) 제도시행의 효과성 분석 기준
(Figure 1) Criteria for effectiveness analysis of enforcement

4. 연구의 결과

Super Decision을 이용해 규제개선 내용의 기준변수의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표 3과 같이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업 촉진, 입지확보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CEO들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효율적인 사용이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자금조달 변수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부 규제개선 내용 중에서는 창업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조달할 경우 초기 창업기업의 불리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개인만이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및 연구원 등이 엔젤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벤처·창업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4)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
(Table 4)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변수 (중요도)			기준변수 내 중요도	세부변수 중요도	순위
창업	1. 진입확대 (0.0869)	1-1	0.4559	0.0397	9
		1-2	0.4254	0.0370	10
		1-3	0.1187	0.0102	21
	2. 부담완화 (0.0653)	2-1	0.1232	0.0080	23
		2-2	0.2662	0.0174	15
		2-3	0.4392	0.0287	12
		2-4	0.1714	0.0112	18
성장	3. 인재유치 (0.1021)	3-1	0.2507	0.0256	13
		3-2	0.1390	0.0142	16
		3-3	0.6103	0.0623	6
	4. 입지확보 (0.0264)	4-1	0.2080	0.0055	25
		4-2	0.3763	0.0099	22
		4-3	0.4157	0.0110	19
	5. 자금조달 (0.2515)	5-1	0.5012	0.1260	2
		5-2	0.1847	0.0465	7
		5-3	0.1371	0.0345	11
		5-4	0.1770	0.0445	8
	6. 판로확대 (0.2496)	6-1	0.5986	0.1494	1
		6-2	0.4014	0.1002	3
회수	7.M&A 및 IPO 활성화 (0.1898)	7-1	0.3944	0.0749	5
		7-2	0.1326	0.0251	14
		7-3	0.4730	0.0898	4
재도전	8. 재창업촉진 (0.0284)	8-1	0.3667	0.0104	20
		8-2	0.2354	0.0067	24
		8-3	0.3979	0.0113	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 순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1위를 차지한 개선점이 25위를 차지한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하위권에 포함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현재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출된 중요도 순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2015년 3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규제개선 내용 역시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되지 않거나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내용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표 5와 같이 구분하였다. 이를 제도개선 내용의 우선순위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제도시행 내용의 효과성을 표 6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5)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시행 여부
(Table 5) Trial state of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시행여부	규제개선 내용(순번)
기 시행	1-2 / 1-3 / 2-1 / 2-2 / 2-4 / 3-1 / 3-3 / 4-1 5-3 / 5-4 / 6-1 / 6-2 / 8-1 / 8-2 / 8-3
미 시행	1-1 / 2-3 / 3-2 / 4-2 / 4-3 / 5-1 / 5-2 / 7-1 / 7-2 / 7-3

(표 6) 개선사항의 중요도와 시행여부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analysis

분석 결과	개선사항 내용
효과기대	1-2. 벤처신청 가능업종 확대 3-3. 휴·겸직 대상/기간 확대 5-3. 개인의 투자펀드 참여 허용 5-4. 투자펀드 출자자 범위 완화 6-1. 공공기관 조달문제 해결 6-2. 직접생산 점검기준 완화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1-1. 창업지원 업종 확대 2-3. 벤처확인 기준 개편 5-1. 엔젤펀드 참여제한 완화 5-2. 대학의 투자행위 규제완화 7-1. M&A 후 재창업 인정 7-3. M&A 관련규제 완화
미비사항 재정비	1-3. 1인창조기업 업종 확대 2-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2-2.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2-4. 온라인 법인설립대상 확대 3-1.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4-1. 공장증설 시 창업계획 승인 8-1. 재창업자 R&D 참여 8-2.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8-3.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검토 후 시행	3-2.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4-2. 대학 창업보육시설 학교인정 4-3. 실험실 공장설치 요건완화 7-2. 코스닥 보호예수기간 단축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 연구의 대상이 ICT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는 것이다. 즉 분석 결과는 ICT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높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제도의 수혜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개선 내용이 현재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효과가 기대되는 후보군이다. 주요 내용은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한 업종의 확대, 교수·연구원의 창업 휴·겸직 대상 및 기간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도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주요 출자자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 창업기업 불필요 항목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판로 확대 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개선 내용이 아직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만족도와 성과측정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높으면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내용은 총 6가지도 분류된다. 정책 수혜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후보군이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이 가능한 업종 확대와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여 벤처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선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엔젤펀드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것과 소속 교원·학생이 창업한 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대학의 투자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M&A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M&A 기준을 완화하여 경직된 M&A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본 후보군에는 자금조달 및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규제가 개선될 경우 창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빠른 시행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고,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벤처·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낮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총 9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개선내용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실시하면 보다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는 후보군이다. 주요 내용은 1인창조기업 대상업종 확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온라인 법인설립 대상 확대, 대학생 창업자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창업기업의 공장증설 부담 완화, 재창업기업의 정부사업 참여제한 완화, 회생절차 신설 및 간소화 추진 등이 포함된다. 본 후보군에는 부담완화 및 재도전 관련 규제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설문 대상이 공장설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큰 규모의 사업실패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ICT 기업의 경우 현재 제시된 정부의 부담완화 규제개선 내용은 당장 기업을 운영하고 영리를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ICT 분야에 맞는 개선책을 추가·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낮으면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내용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시행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군이다. 주요 내용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것과, 대학 창업보육시설의 학교시설 인정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내 실험실공장 설립 대상 확대,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본 후보군은 중요도가 낮고 현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제개선 내용 시행 전 ICT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마련된 개선책의 수정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개선책을 명확히 판단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은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창의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으로 천명하여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4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정책 수혜자인 ICT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를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2015년 3월 현재 제도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정책 시행의 기대효과 및 보완점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내용에 대해 ICT 기업의 CEO는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업 촉진, 입지확보 관련 내용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내용 시행여부를 고려하여 각 변수에 대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효과기대' 후보군으로 벤처신청 가능업종 확대, 휴·겸직 대상/기간 확대, 개인의 투자펀드 참여 허용, 투자펀드 출자자 범위 완화, 공공기관 조달문제 해결, 직접생산 점검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도시행 시급성 필요' 후보군으로 창업지원 업종 확대, 벤처확인 기준 개편, 엔젤펀드 참여제한 완화, 대학의 투자행위 규제완화, M&A 후 재창업 인정, M&A 관련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비사항 재정비' 후보군으로는 1인 창조기업 업종 확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온라인 법인설립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공장증설 시 창업계획 승인, 재창업자 R&D 참여,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대학 창업보육시설 학교인정, 실험실 공장설치 요건완화, 코스닥 보호예수기간 단축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정책 수행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시행 직후의 정성적인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AHP를 이용해 정량적으로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기대효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ICT 분야에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ICT 분야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샘플의 수가 부족했다. 향후 보다 많은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세부 분야별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1] Sin Chang-Ho, Kim Muk-Han, Jung Hyun-Chul, A study on the strategy to build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n Seoul, 11,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12, https://www.si.re.kr/node/24800

[2] Huh Sik, Sa Myoung-Chul, Park Hyun-S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Business Start-up on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41,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2,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jsessionid=BD52F0D316C57270EB204A52456DC611.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cond_organ_id=1420000&research_id=1420000-201100002&pageIndex=2&leftMenuLevel=120

[3] Jung Yoon-Mo,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The HRD Review, 12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4, http://www.krivet.re.kr/ku/ca/prg_kuACBVw.jsp?ga=G520140003&gn=G520140003-9

[4] Song Chi-Seung, Park Jae-Pil, An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enture Firm Supporting Policies in Korea,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51(-), 215-240, 2013, http://www.kocoma.or.kr/ h_board/download.php?afid=1796&PHPSESSID =6a651675a5f2b4bd3e353ed679236583

[5] Kook Seung-Gyu,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the Problem and the Desirable Promoting Method of Venture Business in Korea,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5(2), 45-73, 2002

[6] Korea Assembly, Preceding governments job policy, 2009,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1dSr11NMhl4J:www.fki.or.kr/Common/Download.aspx%3Fid%3D007a3aab-99b9-4e45-956c-40bd89ea0a12+&cd=1&hl=ko&ct=clnk&gl=kr

[7] Han Jung-Hwa, The Policy for SMEs in Creative Economy,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Spring Conference, 2-19, 2013, http://www.dbpia.co.kr/ Article/3235298

[8] Lim Kil Hwan, Jung Yoo Hoon, The main issues and improvement of start-up support policie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 http://www.nabo.go.kr/Sub/01Report/ 01_01_Board.jsp?bid=19&arg_id=5343&funcSUB=view

[9] Roh Hyun-Su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x Support System for Venture Company,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4), 443-467, 2000,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me.asp? tname =kisskw&key=50060624

[10] Lee In-Jae, Roh Hyun-Sub, Jang Seok-O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8), 129-146, 2002, http://www.damis.or.kr/09board/bbs/board.php?bo_Table=paper&wr_id=75&sca=2002&page=3

[11] Lee Hyoung-Soo, Kim Kap-Soon, Effectiveness of Tax Preferences for Venture Companies in Terms of Implicit Tax Phenomena, Korea Tax Research Forum, 10(3), 239-274, 2010, http://www.dbpia.co.kr /Article/1431758

[12] Kim Dong-Hu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Incentives for Venture Company, Journal of Accounting and Finance, 12(1), 109-134, 2012,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60418518

[13] Kim Jae-Jin, Nurturing Strategies for Venture Businesses, Monthly Accounting, 20-41, 1997, http://www.dbpia.co.kr/Article/335377

[14] Chae Kwang-Ki, Yoon Byung-Seop, Ha Kyu-Soo, The Effects of Policy Fun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3), 85-107, 2011,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kw&key=50076426

[15] Kim Jae-Hyun, Park Myoung-Chul, A New Integrated Finance Supporting Network for Venture Firm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5(1), 131-154, 2002, http://kiss.kstudy.com/journal/ 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1935748

[16] Park Yong-Rin,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Venture Eco-System, STEPI, 191(-), 42-52, 2013, http://www.dbpia.co.kr/Article/ 3504015

[17] Lee Sung-Jun, Kim Joong-Hwa, A Study about the Sweden's Policy for Support of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36), 127-159, 2014,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f91306d2722a16877f7a54760bb41745

[18] Yang Hyun-Bong, The Assesmen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Korean Business Incubator Policy,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7(3), 135-159, 2004, http://kiss.kstudy.com/journal/ 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2402305

[19] Park Gyung-ju,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Support on BIC has on the Management Result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9(3), 159-185, 2006,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2577574

[20] Kang In-Seon, A Study on Operating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Forced on the Foreign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3), 19-42, 2011, http://kiss.kstudy.com /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kw&key=50076423

[21] Kim Hyun-Woo, A Study on Plans to Activate Venture Capitals for The Nurturing of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2(2), 231-306, 2007, http://www.tkes.or.kr /base/sub4/sub4_6.php

[22] Lee Min-Hwa, Kim Young-Ji, SME Policy in Creative Econom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3), 235-262, 2013, http://kiss.kstudy.com /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3171573

[23] Chang Soo-Duck, Lee Min-Hw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mediate Recovery Market for Vitalizing Start-Up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4), 315-342, 2013, http://kiss.kstudy.com /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3199520

[24] Kim Dho-Hyun, The Role of Large Companies in Entrepreneurial Eco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83-91, 2013, https://www.creativekorea.or.kr/attach/common/27853.pdf

[25] Han Jung-Hwa, Lee Choon-Woo, Kim Yeong-Soo, An Exploratory Study on New Venture Policies for Research Institute based Entrepreneur in Korea,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29(3), 99-117, 2007,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me.asp?tname=kiss2002&key=2671331

[26] Baek Phil-Gyu, A study on activating rechalleng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resurgence, KOSBI, 11(13), 1-195, 2011, http://www.kosbi.re.kr/kosbi/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2&menuFrontURL=front/basicResearchDetail?dataSequence=H111229K04

[27] Chae Yeo-Ra, Cho Hyeon-Ju, Analysis of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eres, 56, Korea Envrionment Institute, 2011, http://www.dbpia.co.kr/SKnowledge/ ArticleDetail/2652480

[28] Sim Yong-Ho, Byun Ki-Sub, Lee Bong-Gyou, Deriving Strategic Priorities of Green ICT Policy using AHP and ANP,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2(1), 2011, http://www.dbpia.co.kr/ Article/1434279

◐ 저 자 소 개 ◑

심 용 호 (Yong-ho Sim)
2007년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공학학사)
2010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T정책·산업(정보시스템학석사)
2010년~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 선임기술원
관심분야 :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정보통신정책, IT중소기업정책
E-mail : yorish@etri.re.kr

길 운 규 (Wun-gyu Gil)
2012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2012년~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 박사과정
관심분야 :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기술경영, 과학기술정책
E-mail : hugh@etri.re.kr

김 서 균 (Seo-kyun Kim)
1996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경영학학사)
1998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경영학과(경영학석사)
2009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경영학박사)
1999년~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업화본부 중소기업협력부 부장(책임연구원)
2014년~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기술경영학 겸임부교수
관심분야 :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기술경영, IT중소기업정책
E-mail : sk-kim@etri.re.kr